

한경협

ESG Bulletin

2026. 4 | 제 25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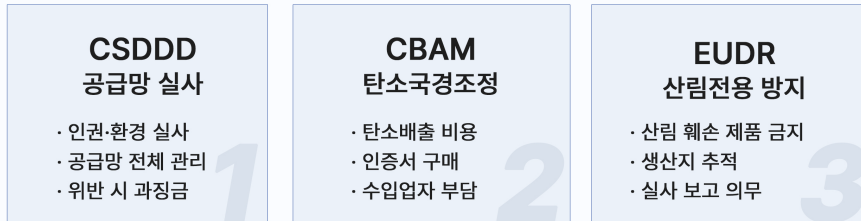
EU의 ESG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갈등

- 미국과 EU의 턴베리 합의를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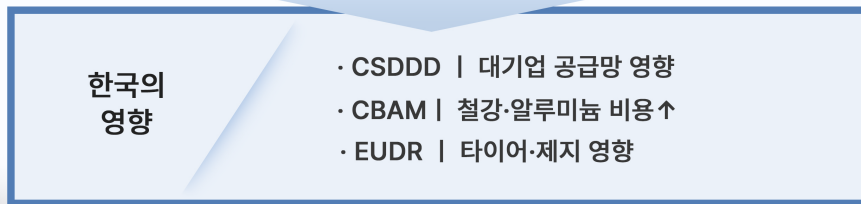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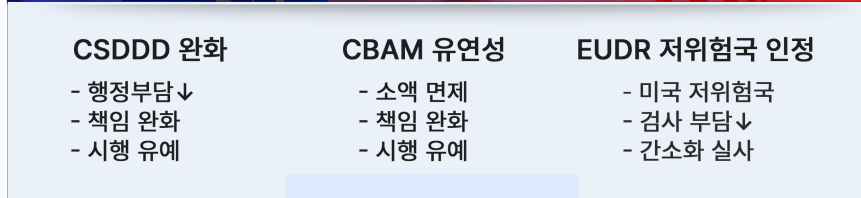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SG 규제의 선두에는 유럽연합(EU)이 있다. 유럽의 각종 ESG 규제는 EU에 수출하고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간 국제통상 현안이 되어 왔다. 미국 역시 EU의 ESG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상채널을 통해 대응하였다. 2025년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발표한 이후 EU, 일본 및 한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여 상호관세 15%,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15% 등의 합의를 한 바 있다. 특히 EU와 미국의 관세 합의는 2025년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Turnberry)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는 한 달 뒤인 2025년 8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기존의 WTO

주도의 글로벌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를 “턴베리 체제”로 명명했을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턴베리 합의는 최근 2026년 3월 26일 유럽의회도 승인한 바 있는데, 동 합의에는 관세에 대한 사항 뿐 아니라 EU의 ESG 규제들이 언급되어 있다. 본고는 이러한 턴베리 합의에서 언급된 EU의 대표적인 세가지 ESG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갈등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턴베리 합의 (2025.7, EU-미국)



1.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은 2024년 채택된 EU의 지침(2024/1760)이다. 동 지침에 따라 EU 각국 기업은 국내 입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역내외 기업에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요구한다. 즉 적용대상기업은 주기적으로 위험에 기반한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부담하는데 대상 기업 뿐 아니라 공급망 내 직간접적인 계약 파트너 협력사들의 노동, 환경 기준 달성 상황까지 실사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받게 된다. 역내기업 뿐 아니라 EU 역내 순매출액이 어느정도 이상인 역외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대상이 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역외국들과의 통상 마찰이 있었다.

턴베리 합의문에는 CSDDD를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과 함께 언급하면서, EU가 두 지침을 통해 미국과의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기업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민사 책임 요건 및 기후 전환 의무를 완화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동 합의 전후로 EU 집행위원회는 CSDDD의 의무를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있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다음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다. 관련 규정은 2023년 채택된 규정(2023/956)으로, EU 외 국가에서 제조된 철강·알루미늄 등 6개 분야 탄소집약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EU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보고 의무를 부담하고, CBAM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27년 이후부터는 CBAM 적용대상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만큼의 인증서를 구입하여 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배출량 측정과 같은 행정부담 및 인증서 구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외기업에게는 부담이 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턴베리 합의문에서 EU 집행위원회는 CBAM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우려를 인식하고, 최근에 미국과 합의한 소액 예외(de minimis exception)를 확인하고, 추후에도 부가적인 유연성(additional flexibilities)을 미국에게 부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실제 동 턴베리 합의 직전인 2025년 5월, EU는 CBAM 적용 배제 대상인 소액 수입업자에 대한 기준을 높여서, 연간 50톤 이하의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모두 CBAM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체 수입업체의 90%에 해당한다. 미국 및 역외국들의 통상 협의가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3.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산림전용방지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DR)은 2023년에 채택된 EU 규정(2023/1115)으로,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일으키는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이다. 소·코코아·커피·팜유·대두·고무·목재 등 7개 품목의 최종 제품 및 파생제품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몇 번의 시행 연기를 거쳐 대기업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기업들은 생산지 지리정보, 공급자 정보 등을 담은 실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위반 시 제품 판매 금지와 회수는 물론, 전년도 EU 역내 매출액의 최대 4% 수준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턴베리 합의문에는 미국이 저위험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 규정이 미국과 EU의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의 생산자 및 수출자의 우려를 EU가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이 담겨져 있다. 사실 2025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의 산림파괴 위험을 평가한 첫 '국가 벤치마킹 리스트'를 발표하며 미국 및 한국을 저위험국에 포함했다. 저위험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연간 통관 물량의 1% 수준만 샘플링 검사를 받게되어 고위험국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다. 다만 저위험국 제품도 산림전용 또는 산림황폐화와 무관하게 생산됐음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운영자는 간소화된 형태의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평가 및 한국에의 시사점

EU의 야심찬 ESG 규제들은 턴베리 합의를 비롯한 역외국과의 통상 협의를 통해 점차 완화되고 있다. EU 내부에서도 과도한 ESG 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드라기 리포트가 2024년 발간 이후 2025년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ESG 규제의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턴베리 합의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EU의 ESG에 대한 통상 협의 상황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앞서 살펴본 EU의 세가지 ESG는 모두 한국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출 가운데 EU는 10.8%의 비중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CSDDD는 우리 수출 대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규제이다. 특히 전기차나 배터리 같이 공급망 관련 업체가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CBAM의 경우, 적용대상 6가지 분야 중 철강과 알루미늄은 우리 기업이 EU에 수출하는 양이 많아, 인증서 구매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UDR 역시 적용대상인 고무와 종이 관련 우리 타이어 및 제지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의 통상 협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기업 전반의 부담을 낮춰 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미국에만 특별한 혜택이 발생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측도 EU와 직접 협의하고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록 기업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가 조정되고 있으나 규제 자체는 도입되고 있고 방향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실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역량을 갖추며, 원자재 공급지 상황을 체크하는 등 기본적인 ESG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비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